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 상향 등〉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332호)

2024.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 상향 등	2
※ 참고자료	12
1.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12
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 내용	14
3. 2024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현황	15
4.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방자치단체) 현황	16

I. 제안경위

2024년 1월 22일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댐은 수자원 공급과 홍수조절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댐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와 규제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댐 운영으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댐 용수의 공급 및 운영 수익금도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댐관리청 등이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출연금에 납부하여야 할 출연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댐주변지역 주민에게 댐용수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44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 상향 등

개정안은 댐 운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환경부장관은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댐을 관리하도록 하고(안 제5조), ②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시행자에서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를 삭제하며(안 제43조), ③댐관리청 등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을 상향하고(안 제44조), ④댐 주변지역에 해당 댐용수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 <u>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관리한다.</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

③ (생략)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2.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⑤ (생략)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생략)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③ (생략)

<신설>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삭제>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00분의 10-----

2. -----

-----100분의 30---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5(댐용수의 우선공급)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 주변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u>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에 댐용수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u>
--	--

현행법¹⁾ 상 저수면적 2백만 m^2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 m^3 이상²⁾ 댐의 댐관리청(환경부, 지자체)과 댐수탁관리자(수자원공사)³⁾는 댐 건설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난방비, 학자금 지원 등)을, 관할 시·군·구청장은 지역지원사업(마을진입로 개선, 댐 주변 휴양시설 설치 등)을 각각 분담하여 수행⁴⁾하고 있음.

- 1) **법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2.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⑤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시행령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 3) **법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4) **시행령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④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1. 지역지원사업: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전전년도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여야 하며, 댐관리청(수탁사업자), 관할 시·군·구는 동 재원으로 지역 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⁵⁾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댐관리청(환경부, 지자체)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대 상 댐)** 저수면적 **2백만㎡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인 댐
 - * 환경부 댐 37개 댐 중 28개 댐, 지자체 댐 97개 중 2개 댐 시행 중
- **(재원조성)** 댐관리청 또는 댐사용권자, 용수댐 수도사업자가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6%**, 용수판매수입금의 **22%** 출연
-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업시행
지역 지원	▶ 농로, 퇴비, 영농시설 등 농축수산업 관련	시·군·구
	▶ 의료기구 구입 지원, 마을진입로 개선 등	
	▶ 둘레길, 캠핑장 등 댐 주변 휴양·레저 시설 설치	
주민 지원	▶ 의료보험료, 통신비, 난방 비등 주민생활지원	댐관리청 또는
	▶ 교육기자재, 학자금, 장학금 등 육영관련	
기타 지원	▶ 댐주변지역 관할 지자체의 댐저수사용료 보조	댐수탁 관리자
	▶ 지역문화행사 지원, 지역문화 홍보시설 설치 등	

자료: 환경부

- 5) **법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2.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3. 차입금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그런데, 용수판매 수입금에 대한 출연 비율의 경우 동법 개정(2021. 5. 20)을 통해 판매 수입금의 20%에서 22%로 확대하였음에도⁶⁾,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출연 비율은 용수 판매 수입금의 22%, 발전 판매 수입금의 6%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른 2024년 수입금(6,968억 1,600만원) 대비 출연금 규모(907억 6,200만원)도 댐 주변지역 피해 보전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5년 간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출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발전판매수입		용수판매수입		출연금 합계 (A+B)
	총수입	출연금(A)	총수입	출연금(B)	
2020년도	196,383	11,774	294,353	58,859	70,633
2021년도	157,712	9,453	295,074	59,004	68,457
2022년도	183,339	10,992	289,474	63,674	74,666
2023년도	172,978	10,369	300,028	65,996	76,365
2024년도	393,459	23,598	303,357	67,164	90,762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은 전전년도 총수입금을 기준으로 산정

이와 함께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의 상해·냉해·성장장애, 주민 건강 피해, 댐 수몰 인근 지역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⁷⁾를 호소하고 있지만,

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

7) 지난 50년간의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액은 농업소득 감소, 주민건강 피해, 교통불편 피해, 기타(저온수)피해 등을 포함하여 연간 553~897억원으로 추정됨 [정책특보(2022-03), 5p, 강원연구원, 2022.10.20.].

현행법⁸⁾ 상 댐의 관리 주체는 댐관리청(환경부, 지자체⁹⁾)과 댐수탁 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로 한정되어 있고, 댐 운영, 댐 용수의 공급, 댐 운영수익금 배분 등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댐 운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환경부장관이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댐을 관리하도록 하고, ②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조정하며, ③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을 상향하고, ④댐 주변지역에 해당 댐용수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44조제2항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전판매 수입금 출연 비율을 현행 6%이내에서 10% 이내로 4% 상향하고, 생활용수·공업용수 수입금 출연 비율을 현행 22%에서 30%로 8% 상향하려는 것임. 이 경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출연금은 908억원

8) 법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9)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댐의 관리청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인 댐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30개 댐 중 동북댐과 회야댐 등 2개 댐에 불과함

에서 1,309억원으로 401억원(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¹⁰⁾,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 증가 및 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출연금 증가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현 행	개정안	증가분
계		908	1,309	401
용수 수입금	출연비율	용수수입의 22%	용수수입의 30%	244
	금 액	672	916	
발전 수입금	출연비율	발전수입의 6%	발전수입의 10%	157
	금 액	236	393	

자료: 환경부

다만, 환경부는 출연 비율을 상향하는 경우 원가 상승에 따라 용수요금 등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¹¹⁾, 댐수탁관리자의 재무여건을 악화¹²⁾시켜 적정 시점 댐 시설 교체·보수 등의 투자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둘째, 안 제43조제4항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에서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를 제외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관할 시·군·구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10) 2022년(전전년도) 총 수입금과 그에 따른 2024년 출연금 기준

11) 출연률 상향(댐용수 부문 출연율을 22%→30%로 상향하는 경우)에 따른 댐용수 원가 상승

현행 생산원가(a)	원가 인상분(b)	인상분 적용시 생산원가(c)	증가율(b/a)
72.46원/m ³	3.69원/m ³	76.15원/m ³	5%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12) 댐용수 부문 출연율을 22%→30%로 상향하는 경우 **연간 244억원 당기순이익 감소 예상**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가안정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수도요금을 '24년~'25년 2년 간 추가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함('23. 9. 6)]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종류, 사업내용 및 사업시행자]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현행	개정안
지역지원사업	●농로, 퇴비, 영농시설 등 농축수산업 관련 ●의료기구 구입 지원, 마을회관·마을진입로 개선 등 ●둘레길, 캠핑장 등 댐 주변 휴양·레저 시설 설치	시·군·구	시·군·구
주민지원사업	●의료보험료, 통신비, 난방비, 전기료 등 주민생활지원 ●교육기자재, 학자금, 장학금 등 육영관련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 관리자	
그 밖의 지원사업	●댐주변지역 관할 지자체의 댐저수사용료 50% 보조 ●지역문화행사 지원, 지역문화 홍보시설 설치 등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개별 시·군·구에서 하기 어려운 지역공모사업¹³⁾, 통합의료사업¹⁴⁾, 지역인재 육영사업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댐 주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이 시·군·구에 재원부담만 하는 것보다 현행 법령과 같이 지원사업의 일부를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¹⁵⁾ 등의 유사 입법례에서도 재원부담자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3) 그린축축 공유팜(남강댐), 진안 거리미술관(용담댐) 등 댐 주변지역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공모(21건, 총138억원). 지역 정주 여건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우수 사업 발굴·확산

14) 낙동강 유역 소규모 3개댐(성덕댐, 군위댐, 보현산댐)의 재원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의료사업(의료버스 방문진료, 전담의사 배치) 등

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주변지역 지원 사업 관련 유사 입법례]

구분	시행근거	사업방식	
		재 원	시행주체
원자력·수력발전 지역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발전사업자 자금	○ 발전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1조, 제22조	○ 설치기관 출연금 등	○ 시설 설치기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발전·송전 사업자 자금	○ 발전·송전사업자 ○ 도지사, 시·군·구청장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24조	○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 자금	○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

셋째, 댐의 용수 공급은 관계 법령¹⁶⁾¹⁷⁾에 따라 공급(사용료)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급 가능한 용수량은 매년 일정하고¹⁸⁾, 대부분 사용처가 미리 정해져 있어¹⁹⁾, 특정 지역에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공급을 감소시켜야 하는 구조임.

16) 법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17)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8) 충주댐의 연간 공급 가능한 용수량은 2,007백만㎥~2,157백만㎥로 지난 10년간 일정한 추이를 보임.

< 충주댐 용수 연간 공급 현황 >

(단위:백만㎥)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공급량	2,099	2,206	2,262	2,014	2,157	2,051	2,007	2,083	2,083	2,082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19) 충주댐의 경우 2023년 기준 용수 계약률이 91.6%로, 가용용수는 8.4%에 불과함.

<충주댐 용수 연간 배분 현황(‘23년 기준)>

(단위:백만㎥)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제44조의5에 따라 댐 주변지역에 해당 댐의 용수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댐 용수 분배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물관리기본법」²⁰⁾과 「하천법」²¹⁾ 상 공평한 물 이용 및 배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물이용 및 사용·배분 원칙 관련 입법례]

▶ 「물관리기본법」 제4조(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 「하천법」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음	- 하천수는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함

문 의 처

02)6788-5546

구분	용수 배분량				K-water 댐사용권(생공)	계약량	계약률
	합계	생공	관개	유지			
공급량	3,380	2,731	315	334	2,731	2,500	91.6%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20) 「물관리기본법」 제4조(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가뭄·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21) 「하천법」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① 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1.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댐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도모(댐법 제43조제1항)

□ **(대 상 댐)** 저수면적 **2백만m²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m³ 이상**인 댐

다목적댐(20)	홍수조절댐(3)	용수댐(5)
소양강, 충주, 횡성, 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 군위, 부항, 성덕, 보현산, 영주, 대청, 용담, 섬진강, 주암, 부안, 보령, 장흥	한탄강댐, 평화의댐, 군남	영천, 운문, 사연, 대곡, 수어

* K-water에서 관리중인 37개 댐 중 **28개 댐 시행중** (용수댐 9개소 미시행)

□ **(재원 조성)** 댐관리청 또는 댐사용권자, 용수댐 수도사업자가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6%, 용수판매수입금의 22% 출연

▶ 연도별 출연금 현황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출연금	737억	771억	666억	614억	631억	665억	706억	685억	747억	764억	907억

□ **(사업구역)** ① 댐의 계획홍수위선 5km 이내 ② 댐의 발전소로 2km 이내 ③ 협의회 및 댐관리자 인정지역(인공방수로 방류지역, 수몰이주단지 등)

* 2023년 기준 전국 246개 기초자치단체 중 59개 시·군·구 대상 시행 (전체 지자체 중 약 24.0%)

□ **(지원사업협의회)** 지원사업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댐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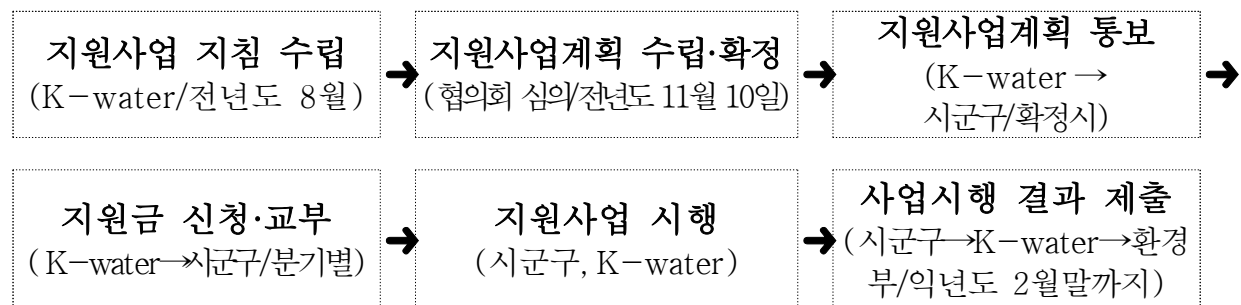
- (구 성) 위원장(시·군·구 부단체장), 위원(공무원, 주민대표, 지사 직원 등)
- (역 할) 사업계획(기타지원 제외) 심의*, 지원금 배분, 기타 필요사항

* 기타지원사업은 K-water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위원장:수자원환경부문이사)에서 심의·의결

□ 사업내용 및 사업시행자

구분	사업내용 및 성격	시행자
지역 지원	·소득원 발굴, 영농시설 및 생활인프라 구축 등 지역단위 지원 ·지역개발정책 및 발전전략과 연계성을 고려, 지자체 담당 *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댐주변경관활용사업	지자체 (시군구)
주민 지원	·취약계층 복지증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주민단위 지원 ·댐관리자 역할 강구, 지역주민 유대 강화를 위해 K-water 담당 * 주민생활지원사업, 육영사업	K-water (댐지사)
기타 지원	·일자리 창출, 댐상류 도랑살리기 등 정책·경영방침 사업 ·지자체 협력 및 현안해소 지원을 위한 지역상생사업 ·법정사업, 댐 홍보시설·거버넌스 운영 등 부대사업 * 저수사용료보조, 사천만 인공방수로 지원, 물문화관 운영 등	K-water (본사)

□ 사업시행절차



참고자료

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 내용

□ 「댐건설법시행령」 제40조제2항 [별표6]

구분		세부 사업 내용
1. 지역 지원 사업	가. 소득증대 사업	1) 공동영농시설·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시설·농로·농업용수로 및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 2) 톱밥 등 수분 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사업 3)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 사업 4) 그 밖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생활기반 조성사업	1) 의료기구 및 구급차량 구입 지원 등 의료환경조성사업 2)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통학차·버스승차대기장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 3)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가축 분뇨 자원화시설 등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사업 4) 그 밖에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다. 댐 주변 경관활용 사업	1) 둘레길, 자전거도로, 캠핑장,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댐 주변 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 관련 시설 설치사업 2) 습지조성,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 3) 그 밖에 댐 경관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2. 주민 지원 사업	가. 주민생활 지원사업	1) 주민건강진단, 의료보험료 지원, 고립주민 교통비 지원, 난방비 지원, 통신비 지원, 전기료 보조, 홍수 조절지 친환경영농지원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육영사업	1) 교육기자재·도서의 구입,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및 아동급식비 지원, 학교 환경교육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의 육영(育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의 지원 사업	가. 댐저수 사용료 보조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 설정예정자에게 납부하는 댐저수사용료를 보조하는 사업
	나. 홍보 및 부대사업	1) 지역문화행사 지원, 댐환경보전연구 지원, 농기구 수리, 댐 주변 고립지역 도선(渡船) 운영 지원, 자매부락 지원 등 대민 지원, 대청결운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 2) 댐 주변 전망시설,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계류시설, 댐 및 지역문화 홍보시설, 전시·공연시설 등의 설치사업 3) 지역 홍보, 댐 견학 등 댐주변지역 홍보사업 4) 녹색생활 실천과 탄소중립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5) 주민간담회, 지원사업 협의회 운영 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참고자료

3. 2024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현황

□ 계획 총괄

구 분	계	소득증대	생활기반 조성	댐주변 경관활용	주민생활 지원	육영사업	기타 지원사업
사업비(억원)	907	112	196	47	259	96	197
시행자	-	지자체(시·군·구)			K-water		
재원	-	댐별 지원금(지사)					기타지원(본사)

□ 지역지원사업(지자체 시행) : 1,488개 사업, 355억원

사업 구분		세부 내용	사업비
합 계			355
소득 증대	소 계		112
	농 립 수 산 업	생산품 공동저장시설, 공동영농시설 등	54
	환경농업지원	친환경 비료·농자재 구입, 운영비 지원 등	5
	기타소득증대	마을기업·영농조합 운영, 태양광 발전설비	53
생활 기반 조성	소 계		196
	생활여건개선	마을회관 보수, 방송·방법시설, 공중목욕장 등	78
	기타생활기반	소하천정비, 마을하수도, 마을환경정비 등	118
	댐주변경관활용		댐주변 둘레길 조성, 환경정비

□ 주민지원사업(K-water 시행) : 1,057개 사업, 355억원

사업 구분		세부 내용	사업비
합 계			355
주민 생활 지원	소 계		259
	생 계 지 원	생계비생필품, 난방·전기·교통비 등 지원	23
	복지관 운영	노인 대상 문화·건강·복지 서비스	35
	의료건강지원	건강진단 및 의료보험료, 의료비 지원	9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 집수리, CCTV 설치, 급수시설 등	9
	기타주민생활	가사간병도우미, 친환경 영농지원 등	183
	육영 사업	소 계	
학습여건개선		원어민영어교육, 체육 문예활동 지원	26
학자금장학금		댐주변 주민 교육비 경감, 학업의식 고취	16
교 육 기 자 재		도서, 교재, 교복 등 학습기자재 지원	6
급 식 지 원		학교급식시설 운영, 결식아동 급식 지원	5
기 타 육 영		체험학습, 해외연수, 통학차량 지원 등	42

참고자료

4.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현황

□ 10개 시·도, 59개 시·군·구

구 분		지자체
한 강 유역	군남댐	(경기) 연천군
	한탄강댐	(경기) 연천군, 포천군 (강원) 철원군
	평화의댐	(강원)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소양강댐	(강원) 춘천시,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댐	(강원) 횡성군
	충주댐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금 강 유역	대청댐	(대전) 대덕구, 동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보령댐	(충남)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용담댐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완주군 (충남) 금산군
	부안댐	(전북) 부안군
영·섬 유역	섬진강댐	(전북)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주암댐	(전남) 순천시, 보성군, 화순군, 곡성군
	수어댐	(전남) 광양시
	장흥댐	(전남)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화순군
낙동강 유역	영주댐	(경북) 영주시, 봉화군, 안동시
	안동댐	(경북) 안동시, 봉화군
	임하댐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성덕댐	(경북) 청송군, 의성군, 영천시, 포항시, 안동시*
	군위댐	(경북) 군위군, 영천시, 의성군
	보현산댐	(경북) 군위군, 청송군, 영천시, 포항시
	영천댐	(경북) 영천시, 포항시
	부항댐	(경북) 김천시
	운문댐	(경북) 청도군, 경산시, 경주시
	합천댐	(경남) 합천군, 거창군
	사연댐	(울산) 울주군
	대곡댐	(울산) 울주군
	밀양댐	(경남) 밀양시, 양산시
	남강댐	(경남)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 안동시는 성덕댐 계획홍수위 5km 이내 지역은 아니나 협의회를 통해 대상에 포함